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09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서영석·김한규·이성윤

박희승 • 문진석 • 한준호

김재원 • 이건태 • 이용선

이정문 • 이해식 • 김태년

민병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을 임의급여로 규정하면서 임의급여의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재까지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조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제130호 조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 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9조의2 신설 및 제5 0조).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병수당에 관한 사항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구 구성의 주소득자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소득의 상실이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상, 주소득자의 기준, 질병· 부상의 범위,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간,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중 "장제비, 상병수당"을 "장제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했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의 수립 등) ① (생 략) 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상병수당에 관한 사항 6. ~ 9. (생략) 7. ~ 10. (현행 제6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u>가구 구성의 주소득자인 가입자</u> 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소득의 상실이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 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의 구 체적 대상, 주소득자의 기준, 질 병 · 부상의 범위, 수당의 지급 기준 및 지급기간,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
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	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u>장제비, 상</u>	병수
<u>당</u> ,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날 수
있다.	

로 정한다.	
제50조(부가급여)	
	장제비,